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7.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00039)	박정의원	2024.5.30.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2024.9.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2.19.) 상정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7.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마을기업 육성지원법안 (2201473)	한병도의원	2024.7.8.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1.11.)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2.19.) 상정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7.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마을기업 지원법안 (2204369)	이성권의원	2024.9.26.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1.11.)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2.19.) 상정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7.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04503)	정동만의원	2024.10.2.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1.22.)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 위원회(2025.2.19.) 상정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 위원회(2025.7.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마을기업 육성지원법안 (2204911)	신정훈의원	2024.10.2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1.22.)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 위원회(2025.2.19.) 상정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 위원회(2025.7.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05410)	이달희의원	2024.11.11.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1.22.)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 위원회(2025.2.19.) 상정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 위원회(2025.7.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10679)	조승환의원	2025.6.9.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7.8.)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 위원회(2025.7.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7.8.)는 위 7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위 7건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7.10.)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운영 중임.

그러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이 근거법률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마을기업은 별도의 법률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체를 말함(안 제2조).

다.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인구감소지역에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과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년의 구성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음(안 제12조).

마. 시·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도별로 마을기업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안 제28조제2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체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2. “마을주민”이란 마을기업이 소재하고 활동하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의 구역 안에 주소로 가진 자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마을기업의 역할 및 책무)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체계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마을기업 및 마을기업의 사업에 대한 지원시책
3. 마을기업 인력양성 및 대표자와 구성원 교육 계획
4. 마을기업지원기관 및 마을기업 종합정보시스템 등 지원체계 구축
5.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조사
6. 그 밖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시·도별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등 지원체계 구축
3. 시·도별 마을기업 현황과 성과분석
4. 시·도별 마을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시·도별 마을기업 대표자 및 구성원 교육
6.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시·도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하는 마을기업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의 활동 및 사업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 ①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마을기업의 사업에 관한 평가
 3.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마을기업 포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도 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과 관할 구역 내 마을기업의 지원시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시·도에 시·도 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이 시·도 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도 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마을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1조(마을기업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자를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주민이 대표자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수·출자비율·특수관계인 간 출자비율을 충족할 것
3.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등 법인의 형태를 갖출 것
4. 마을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활동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 절차·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 및 정보 제공
2. 마을기업 대표자 및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시설비·부지구입비 등의 지원·융자
4.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의 대부·사용
5. 그 밖에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거나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기본법」 제3호제1호 본문에 따른 청년의 구성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제13조(마을기업의 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마을기업의 지정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마을기업 육성 기반조성

제14조(마을기업의 날) ① 국가는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마을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마을기업의 날로 하고, 마을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마을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가공·분석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자료 제공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마을기업지원기관) ① 시·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도별로 마을기업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2. 마을기업의 성과 및 사업보고서 검토
3. 우수 마을기업의 사례 발굴 및 홍보
4. 마을기업에 관한 지역 실태조사 및 연구
5. 마을기업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6. 마을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7. 마을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③ 시·도지사는 지원기관의 운영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지원기관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설치·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마을기업협회) ①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마을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마을기업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을기업의 정착과 활성화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2. 마을기업에 대한 인식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3. 마을기업 대표자 및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4. 마을기업 간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운영

5.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민간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 조정

③ 마을기업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마을기업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포상)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육성과 장려를 위하여 사업성과와 운영현황이 우수한 마을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감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을 지도·감독하며, 제11조에 따른 지정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마을기업에 대하여 사업·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마을기업의 장부 및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마을기업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0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기업에 관한 전문적인 역량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제12조에 따른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 및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마을기업이 아닌 자는 마을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을 받은 자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21조를 위반하여 마을기업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을기업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으로 본다. 다만, 해당 마을기업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마을기업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도지사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마을기업지원기관은 제16조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정된 마을기업지원기관으로 본다.

제4조(마을기업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마을기업협회는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마을기업협회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을 말한다.